

[붙임 1.]

광주역 자연&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-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,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. 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)
-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•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,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.
-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,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급개요

공급 위치	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A1BL (광주시 역동 169-20 번지 일원)
공급 개요	아파트 지하 2 층 ~ 29 층, 9 개동, 총 1,031 세대
입주 예정월	2021년 11 월 예정

2.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

주택형	74	84A	84B	84C	계
배정세대 (예비추천) 다문화가족(서울시)	1(1)	1(1)			2(2)

※ 각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추첨자 명단 접수 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: 미정(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)

3. 분양일정(예정) 및 유의사항

입주자모집공고	2019. 05. 23 (목) 예정
견본주택 개관	2019. 05. 24 (금) 예정
특별공급 접수	2019. 05. 28 (화) 08:00~17:30 예정
특별공급 접수방법	인터넷 청약 신청 -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(www.apt2you.com)
당첨자 발표일	2019. 06. 05 (수) 예정

※ 2019. 05. 23(목) 입주자모집공고를 예상한 분양일정으로 견본주택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
※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: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노약자 및 장애자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인터넷접수와 달리 신청서류 완비 및 접수시간이 상이(오전 10 시~오후 2 시)하오니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청약신청자께서는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4.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추천 통보를 하신 분
- 특별공급 입주자저축(청약자격요건)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제1항[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등 제외]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셔야 합니다.
- ※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횟수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.
- 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, 특별공급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첨에 의해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

- “세대”란 다음 각목의 사람(이하 “세대원”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가. 주택공급신청자
 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-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(예) 부, 모, 장인, 장모, 시부, 시모, 조부, 조모, 외조부, 외조모 등
 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(예) 아들, 딸, 사위, 며느리, 손자, 손녀, 외손자, 외손녀 등
 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(예) 전혼자녀 등
- *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2 "성년자"란 「민법」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.
 - 가.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 - 나.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
-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이란 ‘세대’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.
 - ▷ 주택의 범위
 -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,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.
 -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,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.
 - * 공유지분으로 주택(분양권등 포함)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, 공동소유,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7호의2 "분양권 등"이란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.
 - 가.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
 - 나.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
 - 다.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
 - *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(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, 제565호, 2018.12.11. 시행)
 -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‘입주자모집공고, 관리처분계획(정비사업) 또는 사업계획(지역주택조합)’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, ‘공급계약체결일’ 기준 주택 소유로 봄
 - 분양권 등 매수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, ‘매매대금 완납일’(실거래신고서상) 기준 주택소유로 봄.
-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 - ① 과거 재당첨제한 주택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,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) 또는 “청약 조정 대상지역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(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)는 재당첨 제한기간 미경과시 특별공급 청약 불가
 -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이 아닌 자(단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)
 - 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하여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(기관추천, 신혼부부, 다자녀, 노부모 특별공급 등)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. (철거민, 이전기관종사자 제외)
- 당첨자 선정 방법
 - ①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함
 - ②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함[특별공급 청약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불가]
 - ③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(금융결제원)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

-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,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·호 배정여부 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,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음.
-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금융결제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함.
- 예비추천자는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한 주택형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 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추가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추첨 결과에 따라 추가당첨자 또는 예비순번이 결정됨. 이에 따라 예비추천자는 추가 당첨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음. (단 미달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함.)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신청자(세대원 포함)는 타 특별공급(다자녀 가구, 신혼부부, 노부모 부양)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, 계약 체결 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.
- 공급금액, 전매제한기간, 재당첨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.
-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을 견본주택, 팜플렛 및 문의전화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람.
- 상기 내용은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.

광주역 자연&자이 위치도 / 견본주택 약도 안내



광주역 자연&자이 단위세대 계획

74 Type	84A Type
	
84B Type	84C Type
	

[붙임 2.]

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

주택형	구분	번호	성명	주민등록번호	연락처	비고
74.7643	추천자	1				
		2				
		3				
		4				
		...				
	예비추천자					
84.5516A	추천자	1				
		2				
		3				
		4				
		...				
	예비추천자					
84.5432B	추천자	1				
		2				
		3				
		4				
		...				
	예비추천자					
84.5212C	추천자	1				
		2				
		3				
		4				
		...				
	예비추천자					

* 본 양식은 추천자의 수에 따라 편집이 가능하나, 각 항목은 필수 항목이므로 삭제 시 접수 불가.

* 예비추천자는 순위 미표기하여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.